

#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안 번호	18-68
----------	-------

제출일자 : 2018.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7조제5항제2의2호 추가(2016.7.12.)

## 2. 사업의 목적 및 용도

-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재능을 계발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마포 아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주기 위해 2014년 마포구에서 설립한 장학재단임.
-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제36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재단은 사무국(사무소)을 두고 장학사업을 수행함.
-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는 마포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재능장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까지 약 930명의 학생들에게 1,320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 3. 사업의 필요성

-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구에서 하던 장학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 외 자치구에서 출연한 12개 장학재단 중 7개 재단이 별도의 사무실이 있으며 모두 무상으로 사용함.
- 마포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장학재단 사무실의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타 자치구 장학재단 사무실 현황〉

구분	장학재단	위 치	사용료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강북구청 3층	무상
구로구	구로구장학회	구로평생학습관 1층	무상
은평구	은평구민장학재단	은평문화예술회관 2층	무상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송파구청	무상
영등포구	영등포구장학재단	영등포구청 별관	무상
강서구	강서구장학회	강서평생학습관 1층	무상
성동구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성동구청 지하 1층	무상

4.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현황

- 재단설립일 : 2014. 1. 1.
- 기본 재산 : 107억원
- 직 원 : 3명(사무국 직원 2명, 마포구 파견 직원 1명)
- 장학금 지급 현황
  -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총 930에게 약 1,320백만원의 장학금 지급  
(단위 : 백만원/명)

구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금액	1,320	323	297	284	273	143
인원	930	227	206	201	191	105

5. 무상사용 시설 현황

소재지	용도	면적(m <sup>2</sup> )	사용기간
마포중앙도서관 4층 마포구 성산로 128(성산동)	사무실 / 이사장실	69.64	2017.12.22.~이전시



## 6. 추진경위

- 2018. 4.20 :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실 사용허가 신청(장학재단)
- 2018. 5. 3 :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실 사용허가 계획수립(교육청소년과)
- 2018. 6.11 : 2018년 제2회 마포구공유재산심의회 의결(행정재산 무상사용 적정)

## 7. 법적 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2016.7.12.추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7조

제4조(설립)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제36조(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